

가족부양 쟁점에 관한 일고찰 : 노인과 이혼가족 아동을 중심으로*

송 다 영

(호서대학교)

[요 약]

본 연구는 가족복지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가운데 주요한 의제가 되고 있는 노인과 이혼가족 아동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제반 부양관련 쟁점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와 이혼율 증가라는 사회적 변화 속에서 사적 부양과 공적 부양간 영역 및 경계, 부양관계, 부양의무자 역할 등에 대한 쟁점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양 부양체계의 범위와 역할은 물론 가족부양의 성격, 방법, 기간, 성립요건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 현행 가족구조와 인구구조의 변화로 고려해볼 때 가족을 통한 부양보다는 사회적 부양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가족부양 및 사회부양에 대한 내용을 규율하는 현행 민법과 사회복지법은 여전히 가족부양의 정책기조를 강하게 유지하고 있었으며 사적-공적 부양체계 간 관계정립이나 부양방식에 대한 미흡한 규정으로 많은 논란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구성원의 기본적인 생활안정과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부양과 관련하여 사회보험법은 형식적이고 폐상적인 가족부양 원칙을, 공공부조법은 강한 가족부양의무를 부과하는 이중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다. 결론에서는 급변하는 사회와 경제불안의 일상적 위협 속에서 노인과 이혼가족 아동부양에 대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부양, 가족부양, 사회적 부양, 부양의무자, 노인, 이혼가족 아동

1. 서 론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가족부양기능을 강조하는 전반적인 정책기조 속에서 가족의 기능을 보완하고 강화시켜줄 수 있는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가족복지정책은 없었다. 다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방편으로 극히 제한적 개입을 원칙으로 한 아동, 장애인, 노인 등 개별대상자에 대한 사

* 이 연구는 2004년도 호서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됨.

후적인 소득지원이 있어 왔을 뿐이다. 이와 같은 사회적 지원도 가족 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나타나는 소자녀화, 출산율 감소, 혼인율 감소, 이혼의 증가, 독신가구의 증가 등 가족을 둘러싼 다양한 변화는 인구구조의 고령화 문제와 중첩되어 향후 누가 사회를 이끌어갈 것인가, 어떻게 사회재생산과 안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와 같은 중대한 사회문제를 제기시키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 IMF 이후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의 심화, 실업률 증가, 불안정고용의 일상화, 실질 소득수준의 저하 등과 같은 사회구조적 불안정성은 가족의 부양기능을 장기적으로 약화시킬 가능성성을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누가 그동안 가족을 통해 이루어졌던 아동이나 노인에 대한 부양기능이나 책임을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가족복지정책의 오랜 숙제중의 하나인 부양문제와 부양책임에 대한 논의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산업구조의 고도화 과정은 지난 세기를 거치면서 실업, 질병, 장애와 같은 사회적 위험이나 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보호가 개별 가족 차원을 넘어 사회적 부양으로 이전해 가는 과정과 맞물려 있다. 사적 부양의 공적 부양으로의 전이는 반드시 순차적이거나 조화로운 것은 아니었으며 국가별로 서로 다른 이해집단과 국가 권력 간의 갈등과 타협 속에 이루어졌다(Fagnani, 1998; Jenson, 1997). 특히 현대 복지국가를 구성하는 중심적인 축이라 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는 본질적으로 가족이 전통적으로 수행해온 노동력의 일상적 재생산과 세대 재생산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주요한 목표로 하고 있어서, 가족복지정책은 한 나라의 사회보장정책 성격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Lewis, 1997; Jenson, 1997). 즉 현대사회 복지국가의 성격과 유형은 대체적으로 국가가 사회환경이나 가족의 실제적인 변화를 수용하고, 가족의 변화에 따라 발생한 사적 부양의 한계나 문제를 전체 사회의 정책 과제로 수용해 가는가, 아니면 기존의 전통적인 가족을 바탕으로 한 채 새로이 등장하는 가족을 역기능 가족으로 친단하고 이를 치료·원조하는데 주력하면서 부양의 책임을 가족단위로 묶어두는가에 따라 달라진다(이혜경, 1996).

그동안 우리나라는 정부와 경제관료, 기업가 집단 등에 의한 경제성장 논리나 IMF 이후의 경제위기 딜론에 밀려 사회적 부양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복지학계의 주장은 대중적 공감대를 얻어내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 즉 사회적 부양에 따른 비용문제가 초래할 경제적 정체나 저발전의 위기딜론은 가족부양의 구조적 한계가 지적되면서도 동시에 가족부양이 정책적으로 강화되는 딜레마적 상황을 연출시켜왔다. 그러나 IMF 경제위기 이후 최근에 들면서 우리나라로 보편주의적 가족복지 정책기조나 사회적 부양의 강화가 향후 경제성장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인다는 주장들이 학계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힘을 얻고 있다(김성천, 2000; 양옥경, 2000; Christopher, 2002). 그런데 사회적 부양을 강조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족복지정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가고 있으나, 가족을 통한(혹은 가족에 의한) 부양과 사회를 통한(혹은 사회에 의한) 부양 간 영역이나 경계는 여전히 애매모호한 채로 남겨져 있다.

본 연구는 가족복지정책의 방향성, 특히 사적 부양과 공적 부양 간 영역 및 경계 문제와 부양의무 설정에 대한 정책을 모색해 들어가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쟁점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그동안 주로 가족에서 부양받을 것으로 전제되어 왔던 노인과 최근 늘어나고 있

는 이혼가족 아동을 중심으로 가족부양의 범위와 부양의무자 역할 등에 대한 쟁점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노인과 이혼가족 아동은 급속한 고령화와 이혼율 증가로 인하여 부양의 사각지대로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집단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첫째, 가족부양에 대한 기존의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고 부양문제에 사회적, 법률적 개입을 할 때 발생되는 부양범위나 방식을 둘러싼 쟁점을 살펴보고, 둘째, 우리나라에서 노인과 이혼가족 아동에 대한 부양이 주요한 부양문제로 등장하게 된 사회적 배경을 분석하고, 셋째,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가족부양 관련 법제도에 나타난 강한 가족부양의 강조의 문제점이나 한계성을 밝혀보기로 한다. 이를 통해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족부양의 한계를 사회적 부양과의 결합 속에서 해결을 모색하는 새로운 가족복지정책 방향성을 모색하여 보도록 하겠다.

2. 가족부양을 둘러싼 쟁점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가족부양문제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고령화와 이혼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사회적 변화 속에서 가족을 통한 부양은 적지 않은 문제를 노출했으며, 특히 가족부양자의 과도한 부양부담(권중돈, 1996; 김수영, 2003; 윤현숙, 2001; 이가옥·이미진, 2000; 정경희 외, 2001)이나 이혼가족의 빈곤과 아동부양문제(성정현 외, 2001; 이화숙, 2001)는 이미 많은 실증적 연구들을 통하여 지적되어 왔다.

가족을 둘러싼 부양문제와 부양부담이 1990년대 이래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사회복지 정책 차원의 논의들도 함께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가족을 둘러싼 부양문제와 사회복지정책 논쟁은 주로 성인남성과 성인여성, 그리고 그들의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형태를 전제로 이들이 노동시장, 복지국가, 가족구조의 틀 속에서 어떻게 수용되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애스평 앤더슨(Esping-Andersen, 1990)의 탈상품화론은 완전한 의미의 시민권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가족내 보살핌 노동과 부양기능에 대한 논의가 결합되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면서 가족복지정책의 맥락에서도 접근되고 있다(Christopher, 2002; Lewis, 1992; O'Connor, Orloff and Shavor, 1999; Orloff, 1993; Sainsbury, 1997). 애스평 앤더슨은 가족, 성별분업체계, 젠더관계를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불완전하고 몰성적인 분석틀을 제시했다는 여성주의자의 비판을 수용하면서 가족(구체적으로는 남성생계부양자)에 의존하지 않고도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주체로서 시민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탈가족화¹⁾ 개념을 제시하였다(Esping-Andersen, 1999). 루이스와 오스트너의 생계부양자모델

1) 에스평 앤더슨은 탈가족화를 복지제공의 주체중의 하나인 가족이 수행하는 다양한 형태의 돌봄노동을 사회화하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며, 여성은 탈가족화를 통해 탈상품화될 수 있는 전제조건이 마련된다고 보았다. 구체적으로 탈가족화는 보육서비스의 제공, 아동수당 제공, 모성/부성 휴가 등이 포함되는데, 탈가족화 방식은 국가 또는 시장으로의 지향성을 가질 것인가에 따라 다양해질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후 여성주의자들은 탈가족화 개념을 '여성이 혼인 또는 가족관계에 의하지 않고도 자녀를 기를 수 있는 자율성'이나 '(가부장적) 가족관계의 종속성에서 벗어나 사회복지급여, 다양한

분석들은 보다 직접적으로 어떻게 복지체계가 남성가장이데올로기에 의해 구성되어 있는가를 보여주었다(Lewis and Ostner, 1991; Lewis, 1992 재인용). 그들은 국가유형별 비교를 통하여 남성가장 이데올로기가 강력하고 남성은 생계부양, 여성은 가족보살핌 수행이라는 성역할 구분이 뚜렷한 '강한 남성 생계부양자모델' 국가로는 독일, 영국 및 네덜란드, 상대적으로 온건한 국가는 프랑스, 남성가장관이 약한 국가로는 스웨덴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복지국가 유형론이나 남성생계부양자 가족지원체계에 대한 논의는 핵가족 구조에 기반해 있는 사적 부양체계가 시민권에 기반한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접근될 것인가, 아니면 가족과 시장을 근간으로 하면서 국가가 이를 사후적으로 보완하는 원조적 차원에서 접근될 것인가에 따라 국가별로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환기시켰다(Esping-Andersen, 1999; O'Connor et al., 1999; Sainsbury, 1997). 이를 논쟁은 가족복지 증진에 있어서 국가 역할과 책임에 대한 부분을 환기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 가족, 시장, 젠더관계를 둘러싼 역학에 따라 사회복지정책 및 가족복지정책이 구성되는 과정을 부각시켰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거대 이론으로서 가족복지정책의 방향성이나 원칙을 제시하거나 국가 간 비교 분석들을 제공한 반면, 현대사회의 주요한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고령자 노인과 이혼가족 아동에 대한 부양을 가족과 사회가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풀어야 할 가족복지정책의 과제로 남겼다. 즉 '성인(남녀)부양자+미성년(자녀)피부양자' 모델을 기본으로 한 기존의 가족부양 논의는 최근 사회문제의 핵으로 떠오르는 노인과 비전형적 가족형태로 편입되는 아동들의 부양문제를 접근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Bainham, 1988; Millar, 1996).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사회적 위험이 증가하면서 가족부양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새로운 차원의 가족복지정책을 모색하는 연구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내연구는 외국의 가족복지정책을 소개하거나(김수정, 2002; 장혜경 외, 2003), 외국의 가족복지정책 분석들을 적용하여 우리나라의 가족복지수준을 평가하거나(김성천, 2000; 송다영, 2003; 양옥경, 2002; 엄규숙, 2003; 이해경, 1996), 새로운 사회환경에 부합하는 가족복지정책을 위한 패러다임 모색(이진숙, 2003) 등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가족부양문제의 쟁점을 구체적으로 고찰한 연구는 거의 없다. 각각 노인과 이혼가족 아동에 대한 지원방향을 모색한 연구들도 주로 정책사례를 예시하고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접근되고 있다(양옥경·김혜영, 2001; 송다영, 2004; 정연순, 1998)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제기되었던 가족부양의 주요쟁점을 크게 부양책임의 경계와 부양의 내용을 중심으로 고찰하도록 하겠다.

서비스, 노동시장 관련 규제 등을 통해 독립적인 가구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 등으로 발전시켜 나갔다(Christopher, 2002; Sainsbury, 1997; Ostner, 1995; 엄규숙, 2003 재인용).

2) 부양관련 쟁점 분석

(1) 가족부양과 사회적 부양의 경계에 대한 쟁점

부양(support, maintenance)이란 자기 스스로의 노동이나 재산에 의하여 생활을 할 수 없는 자, 또는 자기의 재산에 의하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자 등에 대하여 누군가가 생활 또는 교육을 위하여 생활비나 생존수단(source or means of living)을 제공하는 것이다.²⁾ 부양은 가족구성원 단위에서는 생존과 세대 재생산을, 국가나 사회적 단위에서는 사회적 재생산과 인구의 유지를 위해서 중요한 문제 가 되어 왔다. 따라서 부양은 내재적으로 사적 부양과 공적 부양의 속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즉 부양문제는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사회가 형성된 이래 가족 내 개별 구성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사적 부양과 국민의 생존권 보장을 실현하기 위한 공적 부양이라는 두 가지 부양체계 간 공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이희배, 1997).

이제까지 가족은 애정과 친밀감, 도덕적 의무에 기초하여 자력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아동과 노인을 부양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일차적인 부양단위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근대 시민사회의 태동과 함께 발달하기 시작한 인간의 기본적 권리에 대한 의식 성장, 자본주의 산업구조 속에서 요구되는 노동력의 안정적 재생산과 양질 노동력에 대한 필요성 증대 등은 점차 개인의 생존이 사회적 부양체계에 의해 보장되어 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혹은 사회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가족은 아동과 노인을 위한 부양체계로 존재하여 왔다. 그러나 동시에 가족을 통한 부양은 급격한 산업경제의 발달과 도시화의 진전과 함께 변화된 가족구조—농경생산을 중심으로 한 확대가족에서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형태로의 전환—로 인하여 또 다른 갈등을 직면하고 있다. 또한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인 저출산율, 이혼율 증가, 고령인구 증가는 가족이 이제 더 이상 일차적인 부양체계가 되기에는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게 하고 있다.

특히 가족관계를 통해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과 노인이 증가하고 있고 이들이 개별적인 소수 집단을 넘어서 장기적 빈곤 계층으로 정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혼으로 가족형태가 변화하면서 발생하는 경제적으로 자립능력이 부족한 미성년 자녀의 양육문제나, 노후의 경제적 생활을 독립적으로 영위할 수 없는 노부모 부양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도덕적 규범이나 윤리의식 강화를 통해서 해결될 수 없다. 이와 같은 문제에 직면한 선진 국가에서는 아동수당이나 연금, 장기요양보험 제도 등 사회보장 차원의 개입과 함께 가족 간 부양을 책임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법제화를 유도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해 오고 있다.

그런데 가족부양과 사회적 부양의 상호보완적 역할이나 필요성을 인식한다고 해도 어떻게 적절하

2) 여기에서 정의한 부양개념은 Henry Campbell Black, *Black's Law Dictionary*, 5th ed. (St. Paul, Minnesota: West Publishing Co., 1979)에 정리된 것으로 민법에서 바탕으로 하는 개념이다. ‘부양’은 일반적으로 경제적 원조와 함께 여성들의 가족 내 돌봄노동(care work)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본고는 가족-사회 간 부양경계나 책임범위를 연구의 초점으로 하고 있어서 주로 경제적 부양을 중심으로 하며 경우에 따라 확장된 부양개념을 적용한다.

게 역할을 배분하고 경계선을 지을 것인가는 가족부지정책의 성격을 결정짓는데 매우 중요한 가늠자이다. 가족부양과 사회부양의 경계는 국가별로 제반 사회보장정책 성격, 사회문화적 특성, 사회집단 간 역학관계 등에 의하여 서로 상이하게 구축된다(장혜경 외, 2002; Esping-Andersen, 1999; Jenson, 1997; Leira, 1992; Sainsbury, 1997). 가족부양 강조 입장은 가족의 가족구성원을 사랑과 보살핌의 원리 위에 양육하고 보호하는 일차적인 책임이 있으며 국가는 이와 같은 가족부양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을 경우 사후적으로 조정하고 지원하는 보조적인(supplemental)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가족을 통한 복지(welfare through the family)를 기반으로, 가족은 노인, 아동, 장애인 등의 보호와 행복을 증진하는 기본단위이며 국가는 이같은 복지수요자에 대한 부양의사를 가진 가족 중 일정한 기준(대부분 소득수준)에 의하여 가족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면 된다(Bainham, 1988). 반면 사회부양을 강조하는 입장은 주로 사회권(social right)³⁾적 차원에서 논의를 한다. 즉 노인은 사회적으로 경제생산자(노동자)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은퇴 이후에 기본생계와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적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는 처지에 있으며, 아동은 차세대 사회적 노동력으로서 사회체제의 유지를 위해 건전한 양육 및 교육을 받을 사회적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국가는 가족의 형태와 상관없이 노인과 아동이 물질적,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한다는 점에서 모든 가족을 위한 복지(welfare for the family)라는 특성을 가진다(Harding, 1996; Lewis, 1997; Millar, 1996).

부양문제는 국가별로 차이가 존재하나 전체적인 경향성으로 분류해 보면, 노인부양은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보다 강조하고 있으며 부모의 이혼으로 빈곤해질 가능성이 있는 아동에 대한 부양은 국가와 가족의 책임을 양립시키려는 경향으로 보인다. 노인에 대한 부양은 노후 사회보장제도인 연금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고령화를 대비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 등을 통하여 점차 가족부양보다는 노인의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적 단위의 부양을 강조하고 있으며, 가족에 의한 수발 및 개호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간다 하더라도 가족구성원의 보호서비스에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형태로 나아가고 있다.

한편 이혼가족의 아동양육문제 또한 이들이 경험하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많은 국가들의 공통된 관심사가 되고 있어 왔는데, 1989년에 유엔총회에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을 채택한 이후 보다 가족과 국가의 공동책임이 강조되는 방향 속에 있다. UN 아동권리협약 제18조는 아동의 양육과 성장에 부모가 혼인형태와 관계없이 1차적인 책임을 지고 국가는 부모나 법적 후견인이 그들의 자녀 양육책임을 수행하도록 지원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함으로써 아동양육에 대한 부모와 국가의 기본적인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이화숙, 2001). 이에 따라 미국을 제외한 서구 선진국 국가는 아동 수당이 있으며 한부모가족 아동을 위한 추가의 지원이 주어지는 국가도 있다. 그런데 1980년대에 들어서는 혼인형태와 관계없이 가족(특히 생물학적 부모)의 아동부양을 강조하는 가족부양 책임론이 상대적으로 강조되는 흐름이 생겨나고 있다. 여기에 국가는 한부모가족 아동의 복리를 증진하는 차원에서 양육비 집행을 현실화시키는 부양료선불제도, 보좌제도 등의 후견인적 기능을 강화시키고 있다.

3) Marshall(1964)에 의하여 제기된 사회권은 20세기 들어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으며 모든 시민들이 물질적 생활 보장, 건강, 교육 등에 있어 사회적 서비스를 누리고 국가적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갖는 것을 말한다.

(Harding, 1996; Millar, 1996).

(2) 가족부양의 내용을 둘러싼 쟁점

① 가족부양 범위: 누구까지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나?

가족부양 범위는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 가족의무가 최소화되어 국가 급여가 개인을 대상으로 하되 부부가 단일한 부양단위로 인식되는 국가(스웨덴), 둘째, 부모의 자녀부양의무만을 부과하는 국가(영국, 아일랜드), 셋째, 부모의 자녀양육의무와 성인자녀의 노부모부양을 포함하는 국가(대륙 유럽국가), 넷째, 직계가족 포함 형제자매, 조부모, 삼촌, 이모 등의 친족까지 확대된 국가(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등) (Millar and Warman, 1996, 김수정, 2003 재인용) 등이 있다. 그러나 가족부양범위는 점차 핵가족으로 제한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미성년 자녀로 한정되는 경향이다. 독일민법은 다수의 부양권자가 있으나 부양의무자가 부양할 능력이 제한되어 모두를 부양할 수 없을 경우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다. 즉 미성년 미혼자녀는 다른 나머지 직계비속의 자녀에 앞서고, 직계비속의 자녀는 직계존속에 앞서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조은희, 2003). 영국도 노령연금이 제도화되어 가족부양을 통하지 않고도 기본적인 생계를 꾸릴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었으며, 미성년 자녀와 동시에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과중된 부담에 대한 사회적 공감이 확산되면서 노부모를 가족부양 의무에서 제외시켰다. 한편 아동의 범주에서는 기존의 전통적 혈연가족 범위를 벗어나 다양한 가족을 수용하는 추세로 이혼 및 별거 이후의 자녀, 사실혼 관계에 의한 자녀, 혈연에 의하지 않는 자녀(입양가족, 재혼가족, 공동체가족) 등은 성인부모에 의해서 동등한 정도(equivalent support)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최미경, 2000). 이때 성인부모는 일차적으로 생물학적 부모를 의미하며 더 나아가 사회적 관계에 의해서 새로이 형성된 부모에게 이차적인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② 가족부양 성격: 생활보호유지 의무와 생활부조 의무

부양의무는 생활보호유지의 의무(1차적 부양의무)와 생활부조의 의무(2차적 부양의무)로 구분된다. 생활보호유지의무란 배우자간 또는 부모와 미성년 자녀와의 사이같이 서로 부양하는 것이 신분관계의 본질상으로 보아 당연하고 필연적이며 따라서 상대방 배우자 또는 자식의 생활을 자신의 생활의 일부와 마찬가지로 보호, 유지하는 그런 의무이기 때문에 부양의무는 자신의 생활정도와 같아야 한다. 이에 반해 생활부조의무는 자신의 생활을 만족시키고 난 뒤 여력을 나누어주는 의무라고 한다(최미경, 2000). 서구에서는 이혼, 재혼이 늘면서 혼인보다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생활보호유지 부양의무가 강조되고 있으며, 노부모에 대한 부양은 가족부양보다는 보다 사회부양에 강조되거나 생활보조적 차원에 머물고 있다.

③ 부양의 방법과 정도: 동거부양과 경제적 부양

부양의 방법에는 경제적 부양과 동거부양이 있다. 경제적 부양은 금전 또는 기타 현물을 지급하는 것이고 일상생활의 배려, 수발(신체적 부양, 개호)까지 하지는 않는 것이다. 이에 비해 동거부양은 부양의 무자가 요부양자를 가족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세대 내에 받아들여 경제적 급부와 함께 일상생활의 배려, 수발까지 하는 것이다. 노인들에 대한 부양은 일반적으로 경제적 부양의 방법으로 행하여지는 것이 보통이며 미성년 자녀도 대개 만 18세를 지나면서 동거보다는 경제적 부양의 의미로 전환한다.

④ 부양기간: 언제까지 부양해야 하나?

모든 사람은 그들의 능력에 따라 일을 하고 자신이 벌어서 스스로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노인, 이혼 후 아동과 여성은 모두 경제적으로 취약하다는 공통된 특성을 가지는데, 이때 언제까지 부양을 해야 하는가와 연관된 문제가 발생한다. 이혼 후 성인부모는 그들의 미성년자녀를 부양할 도덕적, 법률적 의무가 있다. 이러한 경우는 미성년자뿐만 아니라 일할 수 없거나, 부양을 요하는 성년의 자녀도 포함한다. 즉 만18세까지 기본적 부양의무에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21세까지 부양을 해야 한다. 이혼배우자는 3년 정도로 상대적으로 제한된 기간만 한정하고 있으며, 예외적 사건에서만 연장할 수 있다. 노부모는 특별히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사망할 때까지로 전제하고 있는 듯 하나 만성질환이나 치매 등 장기요양이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도 사회보험제도를 통한 사회적 부양을 강조하고 가족지원을 활용하고 있다.

⑤ 부양의무 성립요건: 부양의무자의 능력과 요부양상태

부양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발생한다. 즉 요부양상태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비의 수요를 충당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며, 여기에서 생활비 수요는 의식주 중의 생활전반의 수요 및 의료비, 적당한 오락비 등이 포함된다. 생활비 수요 필요성은 가능가능한 자원에 기초한다. 즉 요부양자가 택지, 건물 등 상당한 자신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처분하는 것이 부적절하거나, 곤란하거나 또는 그것이 생활의 기반이 되고 있다든가 불시의 지출에 대비하기 위한 비축일 경우에는 생활비에 충분한 항상적인 수입이 없는 한 요부양상태로 본다.

그러나 구체적 판단에 있어서는 부양의무자의 능력은 부양권자의 요부양상태에 벼금가게 중요한 변수이면서 동시에 부양자 자신의 생존권과 연관되어 탄력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독일민법에서 직계혈족 간 부양의무는 ‘자신의 적절한 생계를 위협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부양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양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규정함으로써 부양의무자의 부양급부능력은 최소한 자기생활의 유지가 전제되고 그 선을 넘어서 타인을 부양할 수 있어야 하는 원칙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아동과 노인부양의 부담에 의하여 성인의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함께 저소득층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동부양에 있어서는 부양의무자의 책임회피를 위한 부양액은 월급과 기타 재산의 일정액이나 기준선을 제시하는 등⁴⁾ 일반직계혈족 보다 가중된 부양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 이전 혼인관계에서의 자녀와 재혼한 관계에서의 자녀는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원칙 위에서 있다(표계학, 1992). 이를 위해 부양자는 부양능력이 적을 경우 전혼관계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기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추가적 경제활동을 해야 한다는 법적 규정이 있다.

⑥ 부양의무 강제조치

여러 국가에 걸쳐서 모자가구는 이혼한 부가 자의 부양을 위하여 적절한 기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양친가족에 비하여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경우 법률은 부양금 지급을

4) 일례로 유럽국가에서는 부양금액은 일반적으로 의무자의 월급과 기타 재산의 20%를 책정하였다. 여러 명의 자를 부양할 경우에는 임금의 50%를 초과하지 않으며, 부양금은 일시불로도 지급할 수 있게 하였다.

행정적으로 지원하거나, 오랜 연장 후에 강제로 이행하고 징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부양료 징수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국가는 부양기금(독일, 스웨덴)을 만들어 부양료를 선급하고 있으며 부양강제조치를 취하고 있다(표계학, 1992). 이를 통해 부양의무자가 좀더 가족부양 책임을 갖게 하고, 둘째, 부양을 요하는 아동이나 사람들의 즉각적인 부양요구에 응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가 얼마나 깊숙이 가족적 차원의 부양문제에 개입할 것인가는 여전히 논쟁거리로 남는다.

우리나라도 최근 부양문제가 사회적 주요 이슈로 등장하고 있으므로 향후 부양관련 쟁점에 대한 다각적 논의가 필요하다. 다음 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사회환경과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부양문제가 더 이상 가족적 차원에서 해결될 수 없는 상황에 봉착했음을 공식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 장에서는 한국사회의 전반적 구조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제들이 여전히 가족부양을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사회적 부양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지극히 형식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도록 하겠다. 이를 통해 본고는 가족-사회 간 부양경계와 범위에 대한 논의가 우리나라 사회에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역설하고자 한다.

3. 부양을 둘러싼 사회환경 변화와 가족부양⁵⁾관련 쟁점 등장

1) 가족구조 변화와 노인가구의 등장

한국 가족구조의 변화를 크게 요약해보면 첫째 가구원 구성수의 감소를 통한 소가족화, 둘째, 3세대 가구이상의 확대가족의 감소와 1세대 가구의 확대, 셋째 1인 단독가구가 늘어난 것이다(<표 1> 참조). 가구의 세대 구성을 보면, 2세대 가구는 1960년 64.0%, 1970년 70.7%, 1980년 68.5%, 1990년 66.3%, 2000년 60.8%로 약간의 증감이 있었을 뿐 전체적으로 커다란 변화가 없다. 2세대 가구비율이 전체적으로 커다란 변화가 없었던 것과는 달리 3세대 이상 가구는 1960년 28.5%에서 2000년 8.4%로 3분의 1 정도로 감소한 반면 1세대 가구는 7.5%에서 14.2%로 2배 정도 증가하였다. 3세대 가구의 감소로 부부+자녀+노부모로 이루어진 직계가족이 줄어든 반면, 결혼 후 아이를 낳지 않거나 출산을 연기하는 부부가구나 성인 자녀의 독립으로 노부부만 남게 되는 1세대 가구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한다.⁶⁾ 또한 급격한 변화를 보인 가구형태로는 1인 단독가구의 증가로, 1980년 4.8%에서 2000년 15.5%(2,224,000가구)로 3배 가까이 급증하였다. 1인 단독가구는 취학, 취업 등의 이유로 단독 가구를 형성

5) 가족을 통한 부양은 가족원의 구성, 부양자의 소득수준 정도, 정서적 유대관계, 가족부양규범과 가치관 등 다양한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부양은 소득지원을 통한 경제적인 측면의 부양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서적 측면의 부양으로 보호나 수발, 봉양 등의 용어와 함께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친자간 소득을 기반으로 한 경제적 부양개념을 중심으로 접근하였으며, 몇몇 경우에 한정하여 신체적/정서적 부양을 포함하였다.

6) 이외에도 형제들로만 구성된 소년소녀가장가구나 노년기 형제자매간 세대를 형성하여 사는 가구들이 존재하나 비율을 매우 낮다(통계청, 2002).

한 청년층과 배우자와 사별한 후 혼자 남게 된 노인층으로 구분된다.

<표 1> 세대별 가구구성 변화

(단위: 천가구, %)

가구구성	1960년	1970년	1980년	1990년	2000년
총가구수	4,371	5,576	7,969	11,355	14,312
1세대가구	7.5	6.8	8.3	10.7	14.2
2세대가구	64.0	70.0	68.5	66.3	60.8
3세대가구 이상	28.5	23.2	17.0	12.5	8.4
단독가구	-	-	4.8	9.0	15.5
비혈연가구	-	-	1.5	1.5	1.1
평균가구원수	5.56	5.24	4.50	3.77	3.12

자료: 통계청, 해당연도별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노인을 중심으로 한 부부가구와 노인단독가구의 증가는 결과적으로 노후의 생계와 연관된 문제가 발생하는 지점을 확인하게 한다. <표 2>의 6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한 세대구성을 보면 54.5%의 노인은 미혼자녀 혹은 기혼자녀와 함께 살고 있었으며 전형적인 학대가족의 형태로 분류되는 3세대 가족에는 30.8%만이 살고 있었다. 반면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약 50%는 자녀와 동거하지 않고 노인 부부가구(28.7%), 노인단독가구(16.2%), 비혈연가구(0.4%)로 구성된 형태로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층의 세대구성을 연령별로 재분류해보면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1세대 가족에서 성인자녀, 손 자녀와 함께 사는 3세대 가족형태로 편입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이것은 한쪽 배우자와의 사별 후 자녀의 가구로 들어가서 함께 사는 세태를 보여준다. 그런데 노인가구의 세대구성에서 특이하게 보이는 지점은 1인 가구의 비율이 연령층의 상승과 관계없이 계속 일정한 비율을 보인다는 것이다. 노인 인구 중 16%를 차지하는 1인가구의 비율은 85세 이상의 고연령층이 되어도 여전히 15%를 유지하고 있다. 이들 중 다수는 자식들의 이농이후 농촌에 남겨진 노인이거나 소위 부양이 필요하지만 자녀들에 의해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일 것으로 추정된다.

<표 2> 65세 이상 인구의 세대구성별 분포

(단위: %)

	1990년	2000년	65~69세	70~79세	80세 이상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세대가구	16.9	28.7	35.5	27.5	12.8
2세대가구	23.4	23.9	27.3	19.9	26.5
3세대이상가구	49.6	30.8	23.2	33.3	45.1
1인가구	8.9	16.2	13.7	18.9	15.0
비혈연가구	1.2	0.4	0.4	0.5	0.5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각년도

2) 인구구조의 고령화

우리나라는 지난 반세기에 걸쳐 고령인구가 급속히 증가하여,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1960년 3.3%에 불과하였으나 2000년에는 7.1%를 넘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다. 고령인구 증가는 앞으로도 지속되어 2019년 고령사회(14.4%), 2026년 초고령사회(20%)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영국과 독일이 고령화 사회가 되기까지 걸린 기간은 45년이었으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를 경험한 일본도 노인인구의 비율이 7%에서 14%가 되기까지 26년이 걸린 점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정경희 외, 2001). 또한 출산율 저하와 맞물려 부양지수와 함께 노령화지수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60세 이상 노인의 노령화지수는 1966년에는 11.9에 지나지 않았으나 1995년에는 40.4로 증가하였으며 2020년에는 121.8로 증가할 전망이며 2020년에는 60세 이상의 노령인구수가 14세미만의 인구수보다 무려 20%가 많아질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통계청, 「인구추계」, 2004). 무엇보다도 신체적, 정신적 취약성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80세 이상의 초고령 노인인구 비율도 1995년 0.7%에서 2020년에는 2.1%로 3배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사회적 부양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보건복지통계연보, 2000).

이와 같은 노인부양 문제는 부양기간이나 부양의무 등과 연관된 개별 가족차원의 경험에서는 매우 복합적인 양상으로 나타난다. 즉 평균수명이 60세에도 이르지 못했던 1960년대에 비해 평균수명이 80세에 이르는 2000년대에는 부양의식이 약화되었다는 사회적 개탄과 상관없이 노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가족들이 많아졌으며 부양기간도 상당히 장기화되었다는 것이다(<표 3> 참조). 또한 7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높은 만성질환율이나 발병률은 경제적 부양부담에서 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서적 부양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다.

<표 3> 연도별 평균수명 추이

(단위 : 세)

	1960년	1970년	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	2020년	2030년	2050년
계	52.4	63.2	65.8	71.6	76.5	78.8	80.7	81.5	83.0
남자	51.1	59.8	62.7	67.7	72.8	75.5	77.5	78.4	80.0
여자	53.7	66.7	69.9	75.7	80.0	82.2	84.1	84.8	86.2

자료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장래인구추계」, 2001.

따라서 인구의 고령화를 개별단위 가족을 통한 부양만을 강조할 경우 노인부양은 가족 간 갈등(부모-자녀관계, 부부관계, 형제 관계 등)이나 학대와 같은 노인 삶의 질 저하로 나타날 것이다. 부양갈등은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립능력이 없는 어린 자녀를 부양할 때보다는 성인자녀가 노부모를 부양할 때 더욱 복합적인 양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노인부양의 가족 내 부양은 한계상황에 봉착했으며 사회적 차원에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는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

3) 이혼의 증가와 다양한 가족형태의 등장

우리나라에서 부양을 둘러싼 사회환경의 변화를 주도하는 또다른 요인으로는 이혼의 증가이다. 현대 사회에서 점차 결혼은 개인의 삶의 양식을 강제하는 제도로서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으며 애정에 기반을 둔 우애적 부부관계를 중심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의 성격으로 변모해가고 있다. 우리나라로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족의 증가가 근래에 들어 매우 급속한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조이혼율은 1990년 1.1%에서 2002년 3.0%로 약 3배가량 증가하였으며, 이혼수도 2002년 현재 약 15만 건에 이르러 수적으로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통계청, 2002). 또 이혼의 증가만큼 급격하지는 않지만 재혼의 증가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이다. 2000년 현재 총재혼수는 43,617건으로 전체 혼인에서 재혼이 차지하는 비율이 13.1%를 점하고 있다(<표 4> 참조).

<표 4> 이혼, 재혼 추이(%)

단위 : 천명(%)

	1995년	1997년	1999년	2000년	2002년
총 혼인수 (%)	398,484 (100)	388,591 (100)	362,673 (100)	334,030 (100)	306,573 (100)
총 이혼수 (%)	68,279 (17.1)	91,159 (23.5)	118,014 (32.5)	119,982 (35.9)	145,324 (47.4)
총 재혼수 (%)	39,838 (6.4)	41,347 (7.2)	46,455 (9.3)	43,617 (13.1)	47,225 (15.4)

주: 1) 이혼율=(총이혼수/총혼인수)*100

2) 재혼율=(총재혼수/총혼인수)*100

자료 : 통계청, 「인구동태조사」, 해당년도

그런데 이와 같은 이혼가족의 증가는 부모의 이혼 이후 미성년 아동의 부양과 연관된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통계청(2001)에 의하면 이혼하는 부부의 약 70%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부부간 결혼관계의 해체는 단순히 가족형태의 변화를 넘어 이를 가족의 빈곤문제로 이어지고 있어 심각성이 더한다. 전국가구실태조사에 의하면 한부모가족의 빈곤율은 양부모가족의 3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혼가족 아동부양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생활자립 능력이 없는 이들 가족의 아동은 적절한 양육이나 교육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고 말 것이다(성정현·송다영 외, 2001). 즉 이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아동부양문제를 혈연(동거)부모에 의한 미성년자녀 부양이라는 기존 가족부양의 틀 속에 한정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혼가족 아동에 대한 사회적 부양의 확대는 정책적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겠다.

4. 우리나라 사회복지관계법의 부양관련 조항과 문제점

1) 민법에 나타난 부양의무 및 부양범위

(1) 가족부양 범위

우리나라 민법은 1990년 개정되면서 민법 제974조에 부양범위를 ①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② 생계를 같이하는 기타 친족 간으로 정하였다. 여기에서 친족은 부계와 모계를 포함하여 ① 8촌 이내의 혈족, ② 4촌 이내의 인척, ③ 배우자로 규정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부양범위는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그 외 생계를 같이 하는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그리고 배우자가 된다. 이와 같은 부양의무자 범위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매우 광범위한데 이것은 기족연대를 통한 부양 기능을 수행하려고 하는 가족복지정책의 방향과 연결되어 있다(송다영, 2003; 양옥경, 2002). 그러나 오히려 부양의무자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실제 가족생활 단위와도 괴리되어 있어서 현실적인 부양단위가 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반면 근래에 들어 증가하는 이혼가족, 재혼가족, 복합가족, 사실 혼에 기반한 가족과 이들 가족의 미성년자녀에 대한 부양은 현행 민법의 범위에서 제대로 수용되지 않고 있다.

(2) 가족부양 성격: 생활보호유지 의무와 생활부조 의무

민법은 명문으로 직접 생활유지의무와 생활부조 의무를 구별하고 있지는 않다. 민법은 제974조에서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기타 친족 간(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한다)에는 서로 부양의무가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적어도 법규정상으로는 양자의 차이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민법이 부부사이의 부양에 관하여는 제974조 이하의 일반친족부양과 구별하여 부양, 협조의무를 제826조 제1항에 따로 규정하였고 부모-미성년자녀간은 제913조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부부간 부양이나 부모-미성년자녀 간 부양성격이 친족이나 노부모 부양과는 다르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이승우, 2000). 즉 배우자와 미성년자녀는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보호, 교양 등 포괄적 보호, 부양의무를 규정한 반면, 노부모 부양은 제974조 1호의 경제적 부양 외에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아 생활부조 차원에서 노부모 부양을 상대적으로 제한하고 있다.⁷⁾

(3) 부양의 방법과 정도

민법은 부양의 정도, 방법을 일차적으로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하고 협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의

7) 노부모에 대한 부양성격이 상대적으로 제한된 근거에 대해서는 자녀는 부모의 의사에 의하여 출생한 자임에 반하여 부모는 자녀의 의사에 따라 성립된 혈족이 아니므로 자녀의 노부모 부양을 미성숙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과 동질적인 것으로 파악하여 같은 수준의 부양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도덕적으로는 몰라도 법적으로는 무리라는 견해가 있다(이승우, 2000).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부양은 일반적으로 경제적 부양의 방법으로 행하여지는 것이 보통이지만 노쇠, 병약 등의 경우 노인부양의 방법으로서는 동거부양도 요구되게 된다. 그러나 민법은 신체적 부양과 개호를 법적 부양의무의 내용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민법 제975조는 부양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발생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부양을 경제적 급부로 명백히 한정시켜 놓고 있다. 민법이 명문으로 (노인)부양을 경제적 급부로 한정하고 있는 이상 부양권자는 동거부양을 청구할 수 없으며 부양의무자 또한 동거부양을 책임질 의무는 없다. 다만 상호간 필요 인정과 승낙의 경우에만 동거부양이 성립되게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신체적 부양이 현실적으로 부양의무자에 의하여 이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하더라도 이를 법적 의무로 강제되어 있다고는 볼 수 없다(이승우, 2000).

한편 아동은 노인과는 달리 제913조에 포괄적 부양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이혼가족의 아동부양은 개별적 조문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다른 일반 아동과 동일하게 적절한 부양을 받을 권리가 있는바 그들의 동거하지 않는 부모로부터 생활유지적 부양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4) 부양기간

노인부양은 특별한 규정이 없어서 친자관계가 사망이나 기타 다른 이유로 단절되기 전까지로 보인다. 한편 미성년자녀 부양은 부모의 일차적 의무로 명시되며, 일할 수 없거나 부양을 요하는 경우 성년의 자녀도 포함된다. 민법 제974조와 제913조에 의하면 부모는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는 바 만 18세까지 부양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교육, 취학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경우 만 21세까지 부양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5) 부양의무자의 능력 혹은 요보호상태

민법 제975조는 부양의무의 발생여건으로 부양권자의 요건(요부양 상태)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부양의무자측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 그러나 부양의무자의 능력(혹은 여력)도 주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부양가능상태는 부양의무자의 생활을 유지하고 지키면서 사적 부양의 원칙을 채용하고 있는 기초적 생활보장과 한계를 긋기 위해서 필요하다. 노부모 부양의 부담에 의하여 자녀 및 그 가족이 같이 붕괴되어 생활보호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사회적으로도 불이익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6) 부양의무 강제조치

민법은 친족부양에 관하여 명문규정(제974조-제979조)을 두고 있으나 이혼 후 배우자와 자녀의 부양에 관하여는 상세하고 명백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혼 후 부양의무는 대부분 당사자의 해결에만 기대하고 있을 뿐 이혼당사자나 그들의 미성년 자녀양육비 확보에 대한 법적 개입은 부재하다. 오늘날 이혼가족이 늘어나고 사실혼 관계가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해 이를 가족 아동에 대한 부양문제가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로 부양료 이행확보를 위하여 감치제도를 두고 있으나 현실

적으로 잘 이행되지 않고 있다(이화숙, 2001). 이미 많은 국가에서는 이혼가족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이혼이나 혼외출산시에도 아동이 부모로부터 경제적 부양을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명시하고 행정기관을 통해 합리적인 양육비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조은희, 2003; 표계학, 1992). 따라서 이혼가족 아동부양의 경제적 어려움과 제반 고충에 대한 대안적 법률로서 아동부양법이 필요하다(정영순, 1997).

2) 사회복지법의 부양의무 및 부양범위 조항과 문제점

전체 사회구성원의 기본적인 생활안정과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을 살펴보면, 부양자와 피부양자에 대한 범위나 의무에 있어 사회보험법과 공공부조법 및 사회복지서비스법에 이중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즉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법의 가족부양 적용은 상당히 제한적이고 형식적인 차원에 머무르거나 고용보험처럼 피부양자 개념이 전혀 없는데 비해, 공공부조나 사회복지서비스법은 엄격하게 적용되는 경향이 있다(<표 5> 참조).

<표 5> 사회복지법의 부양의무/범위와 문제점

구분	부양의무/범위	문제점
국민건강보험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부양자범위: 배우자와 자녀, 부모, 양가 조부모, 양가 손자녀, 배우자 부모/조부모, 형제, 자매 등 광범위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이 있거나, 여타 부양자가 있거나, 지역가입자는 대상에서 제외되어 피부양자 자격 상실
사회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부양자 범위: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까지 포함 · 가급연금: 소득이나 재산여부와 관계없이 제공 · 유족연금: 생계부양자 사망시 제공 · 이혼분할연금: 5년 이상의 결혼 후 이혼한 배우자에게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부양자의 연령이나 장애정도로 제한하여 피부양자 자격상실 · 가급연금(노인/자녀)은 연간 115,300원에 불과한 형식적 급여 · 유족연금: 생계필요가 아니라 연령과 장애정도 기준에 의하여 근로능력 상실경우에만 발생 · 분할연금: 수급자격이 배우자 부재가 아닌 연령자격으로 제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부양자범위: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까지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가 여성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령, 장애정도, 사업체 근로자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조건제한
고용보험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부양자 개념이 적용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생계부양 고려 없음
공공부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부양자범위: 직계혈족 및 배우자,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친족 포함 · 국민의 기본적 생계보장을 사회적 권리로서의 수급권으로 접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자와 부양자의 재산기준 강화로 비현실적 가족부양 강제 · 긴급부양비, 구상권 도입으로 가족부양 의무 강화 · 부양비 지급이 생활부조의무를 넘어 생활유지의무로 강제되는 경향

우선 사회보험법을 중심으로 부양자 범위나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보험 중 건강보험은 피부양자 범위가 아주 방대하게 정의되어 있다. 건강보험법에 의하면 피부양자의 범위는 배우자와 자녀(친자녀, 법률상의 자녀 모두 포함), 부모, 양가 조부모, 양가 손자녀 등 가입자의 직계혈족과 배우자의 직계비속,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친조부모) 등 인척, 가입자의 형제, 자매, 며느리, 사위 등 직계비속의 배우자까지 포함한다. 이와 같은 피부양자 범위는 상당히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격요건을 살펴보면 첫째, 기본적으로 보수나 소득이 없어야 하고, 둘째, 여타 동거하는 혈족이 없거나 있더라도 소득이 없어야 하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많은 수가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된다. 또한 건강보험의 광범위한 피부양자 범위도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나 소득이 없는 자에 한정(건강보험법 제5조)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모두 가구단위로 부관된 보험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피부양자로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많은 노인가구나 이혼가족 아동은 의료보험의 혜택에서 벗어나고 있다.

둘째,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가급연금과 유족연금에서 피부양자 적용을 하고 있으며 확장된 형태로 이혼 시 분할연금이 있다. 가급연금은 연금가입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배우자, 자녀,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를 대상으로 한다. 배우자에게는 별도의 조건이 부과되지 않는 반면, 자녀인 경우는 18세 미만이거나 2급 이상의 중증장애인인 경우, 부모는 60세 이상이거나 2급이상의 장애가 있을 경우로 제한한다. 이처럼 부양자-피부양자의 관계에 의하여 발생된 가급연금은 자격요건에서는 피부양자의 소득이나 재산여부로 급여를 결정짓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급이 쉬운 특성이 있다. 그러나 가급연금액은 2002년 현재 배우자는 연간 173,080원, 자녀 및 부모는 115,390원으로 지극히 형식적인 차원에서 제공되고 있다(마경희, 2004).

유족연금은 부양자의 사망 후 피부양자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한 급여로,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까지를 포괄한다. 그러나 유족연금은 부양자의 부재시 발생되는 피부양자의 생계보호/유지 욕구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은 아니며, 연령이나 장애 등의 자격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제한이 있다. 즉 배우자가 남성(남편)일 경우는 60세 이상 또는 장애 등급 2등급 이상이어야 하며, 배우자가 여성(부인)일 경우는 5년간은 조건이 부과되지 않지만 5년 이후 지급이 정지되며 50세 이상이 되어야 지급이 재개되며 몇 가지 경우에 한하여 지급이 지속된다. 즉 18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가 있는 자녀가 있거나 근로소득 공제액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없을 경우에만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자녀(손자녀도 동일)인 경우는 18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조부모도 동일, 배우자의 부모/조부모 포함)의 경우는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이와 같은 규정은 유족급여의 발생이 피부양자라는 존재조건과 생계유지의 필요성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능력의 상실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발생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⁸⁾ 또한 혼

8)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피부양자 개념과 범위는 국민연금의 유족급여와 거의 유사하다. 즉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유족은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를 포함하며 형제, 자매도 포함된다. 그러나 배우자가 여성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연령(18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 장애정도(폐질 1급-7급)와 같은 근로능력의 조건을 부과하면서 피부양자 적용을 제한하고 있다. 또 의료보험과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된 재해노동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실체적인 적용대상은 매우 제한적이다(마경희, 2004).

인기간이 5년 이상 된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분할연금은 전 배우자이자 피부양자로서의 조건은 물론,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근로소득도 없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급여가 제공되지 않는다. 단지 이혼 후 60세가 되거나 60세 이후에 이혼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해진다. 이와 같은 적용은 사회보험제도를 통한 피부양자 가족의 부양이나 보호가 매우 소극적이고 형식적이며 피상적인 차원에 머물고 있음을 확인하게 한다.

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민의 생존권을 사회적으로 보장한다는 법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족부양을 강조하고 심지어는 민법보다 더 강하게 가족부양을 강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생계와 일상생활을 유지하기에 힘든 저소득층의 경우 노인, 아동에 대한 가족부양 책임은 그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이르고 있다. 즉 국민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사회적 권리의 하나로 수용한다는 취지로 입법 제정된 법적 취지와 달리 부양에 연관된 수많은 혼선을 노정하고 있다(류정순, 2000). 우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안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공적부양과 사적부양의 경계를 둘러싼 논쟁에서 가족을 통한 부양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법적 강제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법적 취지와 다르게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으며 수급권자는 우선적으로 가족에 의해 부양을 받아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둘째, 부양의무자 범위가 상당히 포괄적이어서 잠정적 가족부양의 범위를 벗어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안에서 부양의무자는 직계혈족 및 배우자,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친족으로 규정되어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구에도 부양의무자는 존재하고 있으며 가족부양의 원리가 있다. 그러나 가족부양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다 할지라도 가족부양규모는 핵가족 규모로 축소되어 있거나, 성인자녀의 노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제외하고 부부와 미혼자녀로 국한되는 경향이 있다(표계학, 1992; 이승우, 200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강하게 드러난 가족부양의 책임강조는 한편으로는 비현실적인 가족관계에 의한 부양을 강조하면서 국가의 공적 부양 책무를 회피시키고, 한편으로는 가족관계의 해체를 가속화시키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재산기준의 강화로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나 재산이 급여신청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최저생계비를 합산한 금액의 120% 이상인 2촌 이내의 혈족이 한 가구라도 있거나, 100~120% 사이의 부양능력미약가구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보호를 받을 수 없게 하였다(출가한 딸은 150%까지 부양미약자로 간주한다). 지나친 가족부양의 중과는 부양의무자가 결국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가족과 피부양가구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부양의무자 가구도 빈곤선 이하로 떨어지고 빈민으로 전락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또 한편으로는 부양의무자의 과다한 부양비 부과와 보장비용의 징수로 인해 가족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거나 심각한 갈등상황⁹⁾으로 치닫기도 한다.

넷째, 현행 생활보장법은 부양의무자의 재산 및 소득판정 기준(어느 정도 경제적 여력이 있을 때 부양의무를 지게 되는가), 부양비 지불수준(어느 정도로 부양을 부담해야 하는가), 간주부양, 부양의

9) 구상권 행사로 인해 가족간 불화가 초래되고 있다고 한다. 빈곤층 노인들은 구상권 조항으로 인해 (부양의무자, 대부분 자식에게 가해지는 제재를 생각하여)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쳐도 신청을 포기하거나 자식의 처벌을 감수하고 신청하는 양자택일을 강요받고 있다(류정순, 2000).

무자 조사유예(어떤 경우에 예외가 인정되는가), 징구와 구상(부양의무 불이행시 어떻게 하는가) 등으로 구성되어, 사실상 부양과 관련하여 국가가 일일이 개입하여 부양관계에 있는 가족에 의한 사적 부양을 강제하고 있다(김수정, 2003). 이에 따라 가족부양이 인지상정이나 도리의 차원이 아니라 법률적 강제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고 있다.

5. 결 론

최근 우리나라는 고령화와 저출산, 이혼율 증가와 같은 사회적 위험요인이 증가하면서 부양문제가 가족복지정책의 주요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사회환경에 적합한 가족복지정책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가족부양 관련 쟁점에 대한 논의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제기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모색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까지 개별적으로 제기되었던 사회적 부양과 가족부양의 경계와 부양방식을 중심으로 부양관련 쟁점을 고찰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민법과 사회복지관계법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법제도에 함축된 강한 가족부양 정책기조와 부양체계와 방식에 대한 미흡한 규정이 갖는 문제점과 한계를 비판하였다. 이를 통해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족부양의 한계를 사회적 부양과의 결합 속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새로운 가족복지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가족복지정책의 궁극적 지향은 모든 가족구성원이 가족형태, 성별, 연령, 지위에 관계없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따라서 가족에 의한 부양이 한계에 다다랐고, 동시에 사회에 의한 부양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가족부양-사회적 부양 간의 경계, 가족부양의 영역 및 범위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이를 통해 새로운 가족복지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Harding, 1996). 우리나라는 급격한 산업화와 사회변동의 결과로 가족구조상 많은 변화가 발생했으며 이에 따라 가족부양이 자체적 한계 내지 모순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1997년 IMF 이후 가속된 높은 실업률, 고용불안정의 증대, 내부 노동시장의 균열 등 사회경제적 위기와 중첩되어 물질적, 심리적으로 불완전하고 불안정상태에 있는 아동, 노인 등 모든 인구집단을 보호하고 부양하는 것이 어느 때 보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최근 급격히 늘어나는 노인인구에 대한 장기적 대안으로 2007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방향성이나 가족-사회 간 역할 분담비율, 분담방식 등에 대한 입장도 현재 상당히 침에하게 대립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가족-사회 간 부양의 경계를 재조명하고 재조정해야 하는 일이 점점 더 필요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유교문화의 강력한 영향력 속에서 가족 간 부양은 부모 자녀 간 애정과 보답이라는 규범과 보편주의적 가치에 의해 유지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사회문화적 요소는 부양규범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변화하는 사회적, 경제적 구조 속에서 가족을 통한 부양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부양방식도 영구히 동일한 양상과 방식으로 존재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송다영, 2004; 이진숙, 2003). 또한 이혼의 증가와 함께 늘어가고 있는 한부모가족, 재혼가족, 복합가족의 등장은 가족의 부양, 즉 부모의 어린 자녀에 대한 부양문

제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동거하지 않는 부모, 혈연에 의하지 않는 부모, 사회적 관계에 의한 부모 등과 자녀에 대한 부양책임의 경계는 실상 그리 단순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사회구조의 변화에 의해 발생된 가족구조 변화, 인구고령화, 가족형태 다양화 등을 아동과 노인을 누가 어떻게 보살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인지, 또 사회와 가족이 아동과 노인에 대한 부양책임을 어떻게 분담해야 하는가 등은 가족복지정책 분야에서 심도있게 논의를 해야 하겠다. 전체적인 방향성으로는 서구선진국 사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노인부양은 사회보장제도의 구축과 함께 공적부양의 범주로 포함시키고, 이혼가족 아동부양은 가족과 사회의 공동책임 원칙 속에서 사적 부양을 보완하는 조치로 보다 효율적인 부양책을 구현할 수 있다고 보인다.

이제 사회복지학 내부에서도 부양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차원을 넘어 가족부양과 사회적 부양 간 역할배분과 책임 경계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제기해야 하겠다. 또 가족을 통한 부양기능에 있어서도 가족부양의 범위, 성격, 방법, 기간, 강제조치 등에 대해 일정하게 한계를 규정하는 사회적 합의가 수반되어야 하겠다. 본 연구는 가족복지정책 중 주요한 이슈중의 하나인 부양관련 쟁점을 제기하였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으나, 분석에 있어서는 주로 사회복지관계법을 중심으로 접근 할 수밖에 없었다. 보다 풍부한 정책자료를 바탕으로 한 심도깊은 논의는 향후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또한 사적 부양과 사회적 부양의 담당한계와 부양정책의 방향에 대한 정책행위자, 사회집단들, 정책대상자간의 입장 차이나 이해관계 등등에 대한 실증적 자료를 바탕으로 한 후속연구들이 지속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권중돈. 1996. “치매노인 가족의 부양부담 결정모형 개발.” 『한국사회복지학』 29: 24-41.
- 김성천. 2000. “한국가족복지정책의 재조명: 문제점과 개혁방안의 모색.” 『한국가족복지학』 5: 71-102.
- 김수정. 2002. 『복지국가 가족지원체계와 구조변화에 관한 일연구』. 서울대박사학위논문.
- 김수정. 2003. “한국의 빈곤정책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변화와 쟁점.” 『경제와 사회』 59: 193-223.
- 김수영. 2003. “치매노인 가족부양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 가족부양자를 위한 정책대안의 모색.” 『한국사회복지정책』 12: 77-105.
- 류정순. 2000. “IMF 이후 공공부조제도 변화가 저소득층의 가족문화 및 소비문화에 미치는 영향.” 『2000년 추계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한국소비문화학회.
- 마경희. 2004. “한국 사회보험의 부양자 가정에 대한 검토.” 『페미니즘 연구』 4(1): 9-54.
- 성정현·송다영·정미숙·한정원·김진. 2001. “재판이혼사례를 통해 본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비 실태와 대안.” 『사회복지연구』 18: 29-58.
- 송다영. 2003. “한국의 가족정책 진단과 행정체계.” 『가족정책토론회 자료집』. pp. 33-52. 한국여성단체연합.
- 송다영. 2004. “부양의식을 통해 본 노인부양지원정책 방향성.” 『사회복지정책』 19: 207-234.
- 양옥경. 2002. “한국가족정책의 현황과 분석: 정책에 내재된 가족주의 가치관을 중심으로.” 『한국에 가족정책은 있는가?』. 한국가족학회 2002년도 춘계학술대회자료집.
- 양옥경·김혜영. 2001. “가족의식을 통해 본 가족정책의 방향.” 『가족과 문화』 13: 29-44.

- 엄규숙. 2003. “한국사회복지제도의 가족모델 재검토” 『2003년도 한국여성학춘계학술대회 자료집』 . pp. 437-459.
- 윤현숙. 2000. “노인부양: 가족의 책임인가, 사회의 책임인가.” 『가족법 연구』 14: 201-226.
- 윤현숙. 2001. “노인 가족부양자의 재가복지서비스 이용의향 및 필요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 21(2): 141-161.
- 이가옥·이미진. 2000. “장기요양보호노인 가족수발자의 정서적 부양부담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0(2): 215-228.
- 이승우. 2000. “노친부양소고” 『가족법 연구』 14: 185-200.
- 이여봉·이미정. 2003. “한국 가족의 변화와 가족정책.” 『가족과 문화』 15(1): 131-158.
- 이진숙. 2003. “가족복지정책의 패러다임 검토”. 『가족복지의 패러다임: 반성과 모색』 . 2003년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공동학술대회 자료집.
- 이화숙. 2001. “부모의 이혼과 양육비 지급 책임.” 『양육비, 자녀와 한부모의 당연한 권리』 .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 성상담소.
- 이혜경. 1996. “한국 가족정책 대안의 선택과 정부·민간의 연계.” 박병호 외. 『한국가족정책의 이해』 . 신정출판사.
- 이희배. 1997. “한국에 있어서 노인의 공적부양-사적 부양과 관련하여.” 『외법논집』 4: 187-208. 한국외대법학연구소.
- 장경섭. 1992. “핵가족 이데올로기와 복지국가-가족부양의 정치경제학.” 『경제와 사회』 15: 173-204.
- 장현섭. 1993. “한국사회는 핵가족화하고 있는가.” 『사회와 역사』 39: 42-80.
- 장혜경·김혜경·이진숙·김현주. 2002. 『외국의 가족정책과 한국의 가족정책 및 전담부서의 체계화 방안 연구』 . 한국여성개발원.
- 정연순. 1998. “한국의 아동부양법에 관한 연구: 미국, 영국 비교” 『한국아동복지학』 7: 53-94.
- 정경희 외. 2001. “장기요양보험대상 노인의 수발실태 및 복지욕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은희. 2003. “독일법상의 직계혈족부양에 관한 고찰.” 『가족법 연구』 17(2): 219-240.
- 최미경. 2000. “부모의 자에 대한 부양의무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총』 16: 461-476. 명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표진학. 1992. “사회주의국가의 사적 부양.” 『가족법 연구』 6: 225-261.
- Bainham, A. 1988. *Children, Parents and the State*. Sweet & Maxwell.
- Christopher, K. 2002. "Welfare state regimes and mother's poverty." *Social Politics* 19(1): 60-86.
- Esping-Andersen, G. 1990.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Cambridge: Polity Press.
- Esping-Andersen, G. 1999. *Social Foundations of Postindustrial Economi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Harding, L. 1996. "'Parental responsibility': The reassertion of private patriarchy?". in E. Silva ed. *Good Enough Mothering?* Routledge.
- Jenson, J. 1997. "Who cares? gender and welfare regimes." *International Studies in Gender, State and Society* 4(2): 182-187.
- Fagnani, J. 1998. "Recent changes in family policy in France: Political trade-offs and economic constraints." in Drew · Emerek · Mahon(eds) 1998. *Women, Work, and the*

- Family in Europe.* Routledge.
- Lewis, J. 1992. "Gender and the development of welfare regimes."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3: 73-91.
- Lewis, J. 1997. *Lone Mothers in European Welfare Regimes: Shifting, Policy Logics.* London: Jessica kingsley Publishers.
- Leira, A. 1992. *Welfare States and Working Mother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illar, J. 1996. "Family, state and personal responsibility: The changing balance for lone mothers in the UK." *Feminist Review* 48.
- O'Connor, J., A. Orloff, and S. Shaver. 1999. *States, Markets, Families, Gender, Liberalism, and Social Policy in Australia, Canada, Great Britain and the United Stat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Orloff, A. 1993. "Gender and the social rights of citizenship: The comparative analysis of gender relations and welfare stat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3: 303-328.
- Sainsbury, D. 1997. *Gender, Equality and Welfare Stat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ainsbury, D. 1999. "Gender, policy regimes, and politics." in Sainsbury ed., *Gender and Welfare State Regime.* Oxford University Press.

A Critical Approach on Family Support, Social Security, and its Direction:

Focusing on Old Parents and Children from Divorced Families

Song, Da-Young
(Hoseo University)

The study is to analyze support-related issues, particularly associated with elderly and children care, which have been a fundamental agenda of family welfare policy. We are expected for societal-level controversy on the relationship of family support and social security in the near future because of rapid increase in ageing and divorce rate. Accordingly, we need to establish social consensus on the extent to which both family support system and social support system are responsible for the life maintenance of the elderly and the children from divorced family. We also clarify the various characteristics(including scope, degree, period of time, and need/manageability) of support provided by family members. Considering the changes of family structure and population composition, the policy of supporting the old and children should go for social responsibility. Findings show that civil law and social welfare law have unclear applic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support and social security, and contents in family support. In particular, public assistance law strongly emphasizes the principle of family support while social insurance laws provide only limited and insufficient family maintenance. The suggestions of further study on support-related issues are given in the rapidly changing society and the increasing economic instability.

Key words: support, family support, social security, breadwinner, elderly, children of divorced family

[접수일 2005. 2. 15. 개재확정일 2005. 4. 20.]